<監査報告書・表紙>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서식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이사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18회계연도 (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・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・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 서명 날인은 법인 : 사무국장, 대학교 : 재무처장, 부속병원 :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: 이사장・대학교: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 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.

학교법인 성 인 학 원

호 남 대 학 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　　성인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2018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 0 1 9년　　04월　　05일

학교법인　성 인 학 원

감　　사　박 형 봉　　박형봉 (인)

감　　사　홍 상 래　　홍상래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　　명　법인실장

성　　명　황 용 선　　황용선 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　　성인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호남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9년　　04월　　05일

학교법인　성　인　학　원

감　사　박 형 봉　　(인)

감　사　홍 상 래　　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　명　기획처장

성　명　윤 천 균　　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교비회계·부속병원 회계)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성인학원(호남대학교)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성인학원(호남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〈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〉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1	787,239,960		불용처리 절차 미흡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계				

붙임 : 1. 학교법인 성인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호남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9년 4월 5일

학교법인 성인학원
감 사 박 형 봉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4230호)
감 사 홍 상 래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	피감사 기관장
2019년 04월 05일	2019년 04월 05일
학교법인 성인학원	호남대학교
이 사 장 박 기 연 (인)	총 장 박 상 철 (인)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성인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8 년 3 월 1 일부터 2019 년 2 월 28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◎ 법인 일반업무 회계 : 지적사항 없음 ◎ 법인 수익사업 회계 : 지적사항 없음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 박 기 인 직인(사인)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호남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8 년 3 월 1 일부터 2019 년 2 월 28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◎ 교비회계 : 1. 2018회계연도 기계기구,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불용처리 절차 미준수 -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(대손상각 등)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기해야 하나 총장 결재를 통해 폐기 - 불용처리 금액 : 금787,239,960원 · 기계기구 : 컴퓨터등 192점 금324,159,740원 · 집기비품 : 책상 등 172점 금463,080,220원	1. 불용처리 지적 관련 조치 내용 - 이사회 승인 후 불용품 폐기 등 불용처리 절차를 비품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명기 - 재물조사 및 불용처리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내용 행정부서 공지 및 재산부서에서 총괄 관리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

피감사기관장 호남대학교 총장 박 상 철 직인 (사인)